

금강대학교 자체평가규정

| | | |
|-----|---|--------------|
| 제 정 | : | 2009. 9. 1 |
| 개 정 | : | 2012. 6. 1 |
| 개 정 | : | 2018. 5. 21 |
| 개 정 | : | 2019. 7. 8 |
| 개 정 | : | 2022. 12. 27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강대학교의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자체 점검·평가하고 평가의 결과를 공시하며 대학발전계획과 전략 수립 등에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삭제 <개정 2022.12.27.>

1. 삭제 <개정 2022.12.27.>
2. 삭제 <개정 2022.12.27.>
3. 삭제 <개정 2022.12.27.>
4. 삭제 <개정 2022.12.27.>

제3조(평가원칙) 평가는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제2장 평가기구

제4조(자체평가기획위원회) ①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진단평가기획·운영위원회(이하 “기획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27.>

②기획운영위원회는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교내위원은 각 부서의 처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교외위원은 평가영역에 전문성이 있는 인사로서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③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위원장을 다른 이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④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교내위원의 경우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은 경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기획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 기본 방향과 전략 수립
2. 자체평가 예산 확보
3. 자체평가결과에 따라 대학교육 개선을 위한 자문
4. 대학 구성원들에게 자체평가 홍보 및 참여유도

5. 자체진단평가위원회 지원 <신설 2022.12.27.>

⑥기획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27.>

⑦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전략혁신처에서 주관하며,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신설 2022.12.27.>

제4조의2(자체진단평가위원회) ①평가원이 제시한 각 영역에 대한 평가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자체진단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2.12.27.>

②평가위원회는 평가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교직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고, 영역별로 1~2명의 위원을 선정하여 역할을 분담한다. <신설 2022.12.27.>

③위원장은 전략혁신처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위원장을 다른 이 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⑤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2.12.27.>

1. 평가원이 제시한 영역에 대한 평가
2. 자체진단평가보고서 작성
3. 현지방문평가 시 담당 평가영역에 대한 면담

⑥평가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12.27.>

⑦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전략혁신처에서 주관하며,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신설 2022.12.27.>

제5조(회의록) 삭제 <개정 2022.12.27.>

제6조(간사) 삭제 <개정 2022.12.27.>

제7조(자체평가실무위원회) ①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진단평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10명 내외로 총장이 위촉하며, 각 부서의 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모든 평가영역을 담당하는 실무진을 구성한다. <개정 2022.12.27.>

③위원장은 전략혁신처 팀장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④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삭제 <개정 2022.12.27.>
2. 삭제 <개정 2022.12.27.>
3. 삭제 <개정 2022.12.27.>

4. 삭제 <개정 2022.12.27.>

5. 자체평가를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 수집·제공

6. 기타 자체진단평가위원회 지원

⑤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 재적위원 1/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삭제 <개정 2022.12.27.>

⑦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전략혁신처에서 주관하며,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개정 2022.12.27.>

제8조(자체진단평가자문위원회) ①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진단평가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②자문위원회는 10명 내외로 총장이 위촉하며, 내·외부의 고등교육전문가, 대학평가전문가, 고등교육전문기구나 타 대학 등의 인사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③위원장은 전략혁신처장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④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전략혁신처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27.>

⑤자문위원회는 자체평가 전반에 관한 자문을 한다. <개정 2022.12.27.>

⑥자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27.>

⑦ 삭제 <개정 2022.12.27.>

⑧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전략혁신처에서 주관하며,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개정 2022.12.27.>

제9조(전담부서 설치) 삭제 <개정 2022.12.27.>

제3장 평가방법 및 절차

제10조(평가계획 수립) 전략혁신처는 매학년도 자체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평가계획을 행정부서 및 학부(과)에 통지한다. <개정 2022.12.27.>

제11조(평가대상) 평가대상은 본 대학 운영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제12조(평가시기) 평가는 격년제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의 지시에 따라 특별히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시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평가영역) 평가영역은 대학정보공시 내용을 포함한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연구 영역
2. 조직·운영 영역
3. 시설·설비 영역
4.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영역

제14조(항목별 평가) 평가영역의 항목별 반영비율, 항목별 평가점수의 산출기준, 항목별 평가등급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평가자료 제출) 평가실시 2개월 전까지 행정부서 및 학부(과)는 전략혁신처에 평가자료를 제출한다. <개정 2022.12.27.>

제16조(평가실시) ① 전략혁신처에서는 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한다. <개정 2022.12.27.>

② 평가위원회는 평가항목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22.12.27.>

제17조(실사) 실무위원회는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해당 행정부서 및 학부(과)에 실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제18조(평가결과 보고) 평가의 결과는 기획운영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받는다. <개정 2022.12.27.>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최초 자체평가는 2009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수행되었거나 집행되었던 자체평가 실적과 집행 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수행·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1조~제18조)

2.(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 전에 수행되었거나 집행되었던 자체평가 실적 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수행·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